

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정

투자자의 경계선은 허물고
투자자율성은 높입니다

2020.8.12. 시행



중소벤처기업부

※ 동 자료는 시행규칙 공포 전에 벤처투자 업계에 홍보하기 위해 작성된 자료이므로 향후 입법과정(고시)에서 세부사항은 변동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

- 1 -

목 차

□ 주요 사항

[참고] 조건부지분인수계약, 특수관계인, 제재심의위원회

□ 분야별 내용

1.  전문개인투자자
2.  개인투자조합
3.  창업기획자
4.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
5.  벤처투자조합

주요 사항

구분	내용
제정 목표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벤처투자 진입장벽을 완화하여 민간중심 투자생태계 조성 ② 벤처펀드의 자율성을 보장하여 민간자금 유입촉진 ③ 창업 초기기업의 투자유치 기회 확대 ④ 투자제도 단순화·체계화하여 수요자 편의성 제고
구성	<p>기존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및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으로 이원화된 벤처투자제도를 일원화·체계화하기 위한 것으로 총 9장 80개 조문으로 구성</p> <p>* (시행령) 9장 51개 조문, (시행규칙) 8장 28개 조문, (고시) 전문개인투자자 관리규정 등 5개 고시</p>
주요 내용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벤처투자 대상 확대 (음식업 등 열거식 규제 → 사행산업 등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경우만 제외) ② 벤처투자 방식 확대 (투자 정의에 조건부지분인수계약[[SAFE] 제도 법제화) ③ 창업기획자에게 벤처투자조합 결성 허용하여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 ④ 투자의무비율을 유연하게 적용하여 펀드 운영의 자율성 강화 ⑤ 전문개인투자자 등록제도 도입 ⑥ 벤처투자조합으로 일원화 (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한국벤처투자조합 등) ⑦ 한국벤처투자 법정 기관화

참고1 조건부지분인수계약 (법 § 2, 규칙 § 3)

□ 벤처투자 방식에 창업초기기업 투자에 적합한 실리콘밸리식 투자방식인 조건부지분인수계약* 도입 (SAFE : 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)

* 기업가치 산정이 어려운 초기기업에 먼저 투자하고 후속 투자자의 기업가치 결정에 따라 선행 투자자의 지분율을 결정하는 방식

* (예) 최초 8억원을 투자하면서, 후속 투자가치에 대해 80%(할인율)을 적용해 지분인정 계약
→ 추가투자 유치로 기업가치가 100억원으로 결정 시 80억을 인정해, 10% 지분 확보(8/80억)



요건

- ① 투자금액의 지급에 따른 이자가 발생하지 않고 투자금액의 상환만기일이 없음
- ② 투자금액을 먼저 지급하고 후속투자의 기업가치 평가에 연동하여 지분량을 확정
- ③ 조건부지분인수계약에 대해 주주 전원의 동의 필수
- ④ 회사가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을 통해 투자받은 후 회사의 자본변동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사실을 계약 상대방에 고지 필수

참고2 특수관계인 (영 § 4조 등)

<p>본인이 개인인 경우</p>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배우자(사실상 혼인인 관계 포함) ② 4촌 이내의 인척(혼인에 의하여 관련된 사람) ③ 6촌 이내의 혈족(혈연관계에 있는 사람) ④ 직계존속(부모, 조부모) ⑤ 직계비속(자식, 손자) ⑥ 혼인 외의 출생자의 생모 ⑦ 본인의 금전으로 생계를 유지 또는 함께하는 사람 ⑧ 본인 혼자 또는 1~7번에 언급한 자와 합하여 법인·단체에 30% 이상을 출자하거나 법인·단체의 중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해당법인·단체와 그 임원 ⑨ 본인 혼자 또는 1~8번에 언급한 자와 합하여 법인·단체에 30% 이상을 출자하거나 법인·단체의 중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해당법인·단체와 그 임원 	
<p>본인이 법인·단체인 경우</p>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임원 ② 계열회사 및 그 임원 ③ 혼자서 또는 위 1~8번에 관계있는 자와 합하여 본인에게 30% 이상을 출자하거나 본인의 중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개인·법인·단체와 그 임원 ④ 혼자서 또는 1~3번에 관계있는 자와 합하여 다른 법인·단체에 30% 이상을 출자하거나 다른 법인·단체의 중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해당법인·단체와 그 임원 	

참고3 제재심의위원회 (법 § 22, 36, 49, 62)

<p>심의대상</p>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개인투자조합, 창업기획자, 창업투자회사, 벤처투자조합(이하 '운영주체·조합') 및 그 임직원의 제재에 관한 사항, 이의신청 등
<p>위원회 구성</p>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운영주체·조합의 관리·감독업무를 소관하는 과장급 공무원(당연직) ② 운영주체·조합 관련 운영기관 및 협회가 지명한 자(당연직 2인) ③ 변호사·공인회계사로서 벤처투자 업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(위촉직 2인)
<p>위원회 운영</p>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반기마다 개최하는 것을 원칙(안건 수요에 따라 조정 가능) ② 위원 중 2/3 이상 출석 개의,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(가부동수시 위원장 결정) ③ 위원회개최 10일전까지 제재대상자에게 개최사실, 조치예정내용 등 사전통지
<p>이의신청</p>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심의결과 이의 있는 경우,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(구체적 사유 명시) ② 이의신청 결과에 대해서는 다시 이의신청 불가



전문개인투자자

☞ 벤처투자를 하는 개인으로 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자

□ 벤처투자법 제정 전·후 전문개인투자자 요약 비교표

구분		개정 前	개정 後
제도 운영		확인제 (2년간 인정, 재신청 필요)	등록제 (요건 충족시 계속 유지)
신청 기준	투자 실적	최근 3년간 창업·벤처기업에 1억원 이상 투자실적 보유	좌 동
	경력·자격	창투자 등에서 투자심사 업무 2년 이상 경력 등 13가지	창투자 등에서 투자심사 업무 2년 또는 투자 관련 업무 3년 이상 경력 등 11가지
투자 의무		없음	등록일 기준, 3년마다 창업·벤처기업에 1억 원 이상 투자
관리	취소	없음	부정한 방법으로 등록, 투자 의무 미준수 등 4가지
	보고 의무	없음	변경사항, 투자실적 등 업무 운영상황 정기보고(반기), 수시보고(월별)
	과태료	없음	변경등록 거짓, 업무운영상황 미보고시 부과 (3백만원 ~ 최대 3천만원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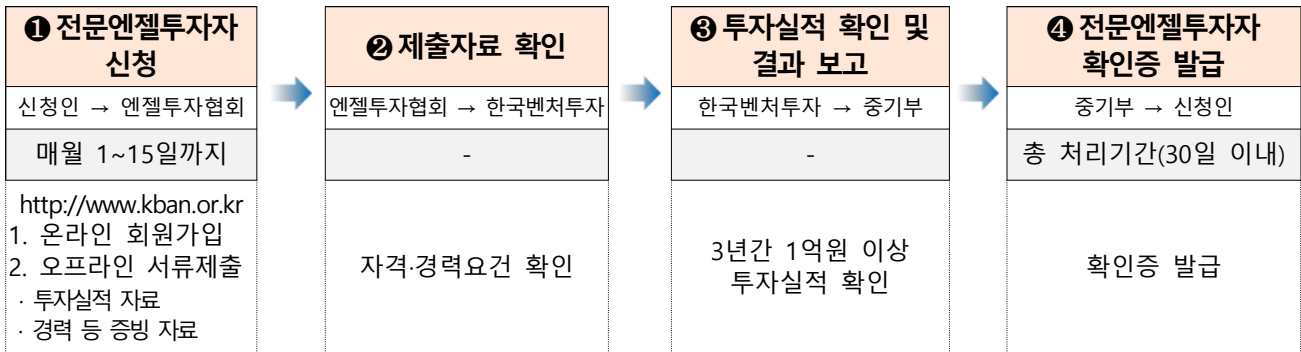
I 등록요건 (법 §9~10, 영 §4~5, 고시 §4)

□ 투자실적 및 자격·경력요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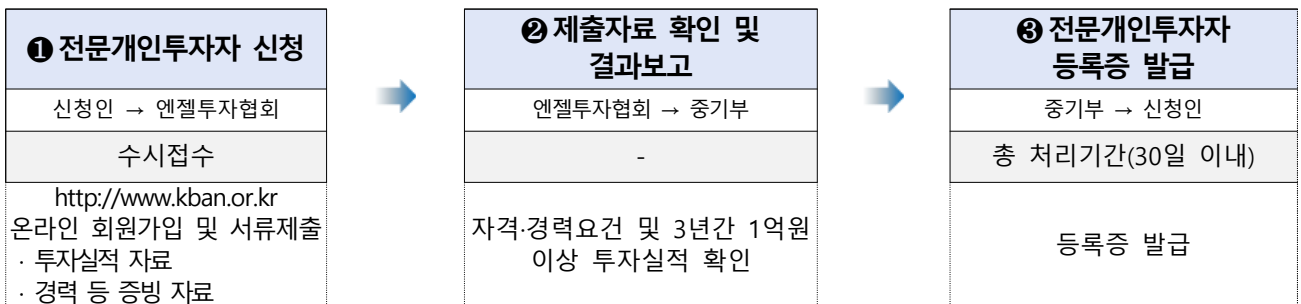
구분	종전	변경
투자 실적	<p>창업자, 벤처기업,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최근 3년 이내에 1억원 이상 투자</p> <p>* 단, 비상장 기업에 한하며, 신주로 6개월 이상 보유해야 하며 특수관계인의 지분은 아닐 것</p>	<p>종전 기업대상 외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추가</p> <p>* 단서 조항 중 신주 외 조건부지분인수계약 추가, 코넥스시장에 상장하기 위해 비상장기업의 신규 발행 주식은 인정</p>
자격·경력요건 중 1개 충족	<p>① (자격) 기술사, 변호사, 공인회계사, 변리사 경영·기술지도사, 세무사, 감정평가사</p>	<p>① (자격) 종전에서 세무사, 감정평가사 제외</p>
	<p>② (학위) 박사학위 소지자 (이공·상경계열 한정)</p>	<p>② (학위) 종전 외에 학사학위 소지자로 국·공립 연구기관 등에서 4년 이상 종사자</p>
	<p>③ (경력) 1) 주권상장법인의 창업자 2) 주권상장법인의 이사로 3년이상 경력자 3) 벤처기업의 창업자 4) 창투사, 유한회사, 신창사에서 투자심사업무 2년 이상 경력자</p>	<p>③ (경력) 1) 종전 외에 상장할 당시 대표 추가 2) 삭제 3) 종전과 동일 4) 종전 외에 신기술사업금융회사, 기술지주회사에서 투자심사업무 2년 이상 또는 투자관련 업무 3년 이상 경력자</p>
	<p>④ (교육) 전문엔젤 교육과정 이수자</p>	<p>④ (교육) 종전과 같음</p>

- 7 -

□ 등록절차 (종전)



□ 등록절차 (변경)



* 등록일을 기준으로 **3년마다 1억원 이상투자 여부 확인** (미충족시, 등록 취소)

- 8 -

II 등록취소 등 (법 §11, §72, §80, 영 §47, §51)

□ 보고 및 검사

종 전	변 경
< 없음 >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보고 - 정기보고 : 업무 운영상황 등(반기별) ② 확인 및 검사(필요시) - 등록요건 유지, 투자 의무 준수 여부

□ 행정처분에 대한 세부기준

종 전		변 경
등록 취소	< 없음 >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②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③ 투자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④ 가장(假裝)납입 등 거짓으로 투자한 경우
과태료 부과	< 없음 >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변경등록 하지 않은 경우 ⇨ 3백만원~1천만원 ② 변경등록 거짓으로 한 경우 ⇨ 2천만원 ③ 업무운영상황 등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⇨ 3백만원~1천만원 ④ 업무운영상황 등을 거짓으로 한 경우 ⇨ 3천만원 ⑤ 관리기관의 검사를 거부한 경우 ⇨ 2천만원







개인투자조합





☞ 개인 등이 벤처투자자와 그 성과의 배분을 주된 목적으로 법 제12조에 따라 등록한 조합

I 등록요건 (법 §12, 영 §6, 규칙 §5)

□ **결성주체(업무집행조합원, GP)**

중 전		변 경	
① 개인 	약정일로부터 3개월 이상 지난 채무가 1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은 자	① 개인 	중전과 같음
② 법인 	사업내용에 창업자나 벤처 기업에 대한 투자 또는 이에 투자하는 조합에 대한 출자를 포함하고 있는 회사	② 법인 	사업내용 요건 외 신기술사업금융회사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불가
출자지분이 조합 출자금 총액의 5% 이상		출자지분이 조합 출자금 총액의 5% 이상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창업기획자 (창투사·LLC·신기술사업금융회사 경영 시 불가 +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불가) - 창조경제혁신센터 - 신기술창업전문회사 -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-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창업기획자 (창투사 또는 LLC 경영 가능) - 창조경제혁신센터 - 신기술창업전문회사 -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-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	

□ **상호출자자(유한책임조합원, LP)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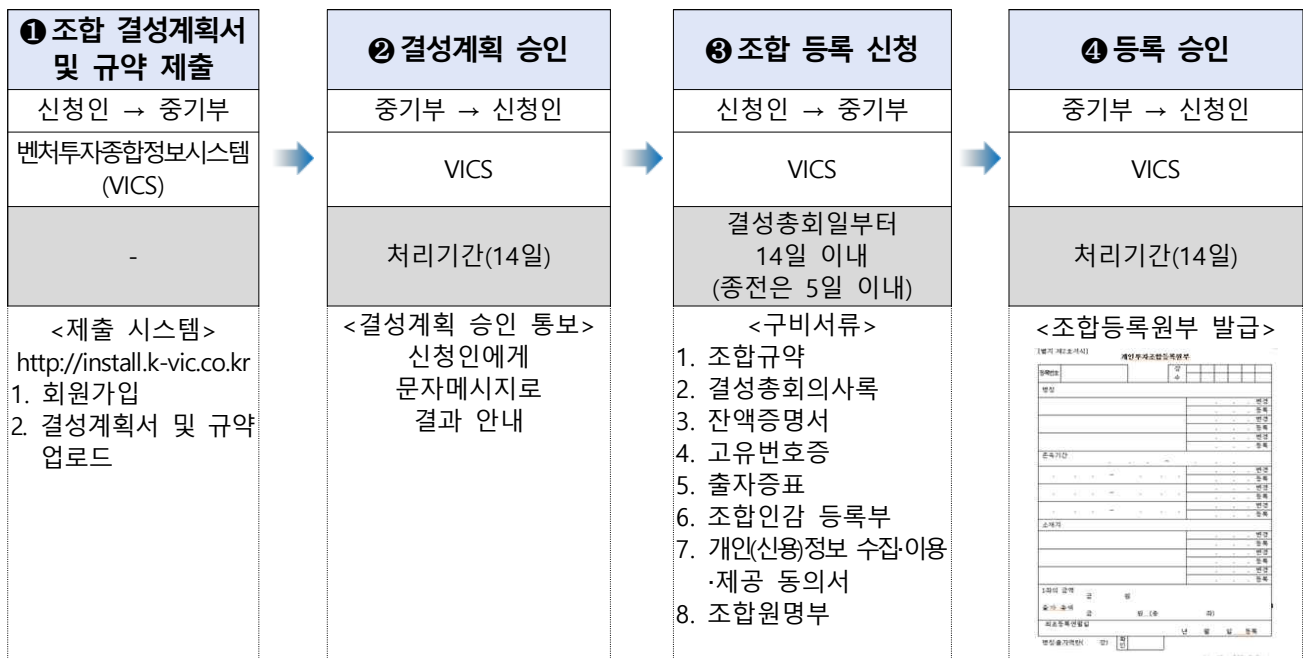
중 전		변 경	
① 개인 		① 개인 	
② 법인 		② 법인 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창업기획자 (창투사·LLC·신기술사업금융회사 경영 시 불가 +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불가) - 창조경제혁신센터 - 신기술창업전문회사 -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-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- 대학, 산학협력단, 한국과학기술원 등 (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이 출자한 조합에 한함) - 모태조합 또는 한국벤처투자조합 - 법인 (창업기획자가 GP인 조합에 한함, 법인 출자금액의 합이 조합 결성액의 49% 이내만 출자 가능) 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창업기획자 (제한 없음) - 창조경제혁신센터 - 신기술창업전문회사 -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-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- 대학, 산학협력단, 한국과학기술원 등 (벤처투자모태조합이 출자한 조합에 한함) - 모태조합 또는 벤처투자조합 - 법인 (창업기획자가 GP인 조합에 한함, 법인 출자금액의 합이 조합 결성액의 30% 이내만 출자 가능) 	

□ 조합의 출자금 총액, 조합원 수 등 (중전과 동일)

①	출자금 총액	1억원 이상
②	출자 1좌의 금액	100만원 이상
③	조합원 수	49인 이하
④	존속기간	5년 이상

Ⅱ 등록절차 (법 §12, 규칙 §6)

□ 등록절차 (중전과 동일)



Ⅲ 투자 의무비율 (법 §13, 영 §7)

구분	종 전	변 경
투자 비율	<p>비상장 창업자 및 벤처기업에 100% 의무 투자</p> <p>(GP가 창업기획자인 조합은 초기창업자에만 투자)</p>	<p>① 등록후 3년 이내 비상장 창업자 및 벤처기업에 50% 이상 의무 투자 (GP가 창업기획자인 조합은 초기창업자에만 투자)</p> <p>② 50% 미만은 자율 투자 가능</p> <p>단, 상장법인 투자는 10% 이내</p>
투자 방식	<p>○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·무담보전환사채 또는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</p>	<p>① 의무 투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신규로 발행되는 주식 또는 지분 인수 및 무담보전환사채,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, 무담보교환사채 인수 -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의 체결 <p>② 의무 외 투자(예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신주 또는 구주 인수(상장 주식 포함) - 해외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 인수 - 프로젝트 투자 등

Ⅳ 행위제한 (법 §14, 영 §8, §9)

□ GP의 행위제한 (종전과 동일)

- ① 자기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조합의 재산 사용
- ② 자금차입·지급보증 또는 담보 제공
- ③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회사에 투자
- ④ 금융기관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소유
- ⑤ 非 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소유 (단, 담보권 실행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예외)
- ⑥ 그 밖에 조합 설립 목적을 해치는 행위
 - 해당 GP 또는 조합의 특수관계인*과의 거래(해당자에게 조합자산 매각 또는 신용공여, 조합재산으로 해당자가 발행·소유한 주식 또는 지분 매입)
 - * 1) 본인과 임원 및 그의 혈족 6촌, 인척 4촌, 계열회사 등, 2) 본인과 "1)"의 구성원들이 모두 합하여 피투자기업 단체 등의 지분을 30% 이상 보유 시, 3) 피투자기업 등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·단체 등
 - ※ 행위제한 예외 : 조합 자산 운용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△조합원 전원 동의 시 △조합의 해산 또는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없는 투자지분의 회수 등 사유 발생시 △거래 상대방이 해당 GP의 주요주주인 기술지주회사 등일 때
 - 개인투자조합의 명의로 제3자를 위해 주식 취득
 - 정상적인 거래 관계 외의 거래를 통해서 자금을 받는 행위 등

V 등록취소 등 (법 §22, §80, 영 §51)

□ 행정처분에 대한 세부기준

중 전		변 경
조합	① 등록취소 -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-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- 공모의 방법으로 조합 가입을 권유한 경우 - GP가 행위제한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경우 -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내 결산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등 ② 시정명령, 경고, 주의 - 구체적인 기준 부재	① 등록취소 -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- 종전의 등록취소 사항에 해당하여 시정명령·경고·주의를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받고도 반복하는 경우 - 위반사실 보정기간 경과 후에도 보정되지 않을 경우 ② 주의 : 위법·부당행위의 정상참작 사유가 충분하고 사안이 경미한 경우 ③ 경고 : 위법·부당행위의 정상참작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시정명령 : 주의·경고에 해당하나 보정되지 않거나 보정 명령 조치가 필요한 경우 ○ 면직 또는 해임, 직무정지, 경고(GP의 임직원) ○ 경고, 주의(GP) - 경중에 따라 문책 기준 마련
GP 또는 임직원	○ 해임요구, 경고, 주의(GP의 임직원) ○ 경고, 주의(GP) - 구체적인 기준 부재	

□ 행정처분 절차

- 등록취소 사항 적발 → 위반사항 사전 통지 → 제재심의위원회 개최 → 행정처분 결과 통지 → 이의 시, 이의신청 → 위원회 재심의 → 결과통지 → 청문 실시(청문은 위원회 진행시 병행하여 진행 가능)

□ 과태료 부과

- (종전)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 **500만원 이하 부과** ⇒ (변경) 중요사항의 변경등록을 하지 않거나 결산서를 미제출 또는 거짓으로 제출한 자, 업무운영상황을 보고하지 않은 자에 대해 **3천만원 이하 부과**

VI 보고 및 수익처분 (법 §16 및 §21, 영 §12 및 §47)

□ 보고 및 검사

중 전	변 경
① 보고 - 결산보고 :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- 필요 시 보고 : 투자실적 등 ② 확인 및 검사(필요시) : 업무 운영상황	① 보고 - 결산보고 :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- 정기보고 : 업무 운영상황 등(반기별) ② 확인 및 검사(필요시) - 등록요건 유지, 투자 의무 준수 여부 - 업무 집행, 행위제한 위반 여부

□ 수익처분

중 전	변 경
<없 음>	○ 조합 규약에 따라 투자수익* 발생에 기여한 GP에게 성과보수 또는 임직원에게 성과급 지급 가능 * 투자수익 = 조합 자산 평가금액 - (출자금액+운영경비)



창업기획자

☞ 초기창업자에 대한 전문보육 및 투자를 주된 업무로 하는 자로서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법인(비영리법인 포함)

□ 벤처투자법 제정 전·후 창업기획자 요약 비교표

구분		개정 前	개정 後
선발	방법	창업자 선발대회 또는 공정한 방법 마련하여 선발	선발기준 및 선발절차 마련하여 선발
	보육		
	보육공간개념	초기창업자의 사무실 제공	초기창업자의 보육공간 제공
	시설규모	기준 없음	종전과 같음
	시설보유방법	소유 또는 임대차계약 유지	기존 외 공유오피스 등과의 협약도 인정
	보육거리	사무실과 보육공간과의 거리기준 없음	동일 광역시·도내 원칙. 다만, 전문인력 상주 등 예외 인정
	장비보유	제조업 지원시, 시제품 장비보유	없음
	보육기간	3개월 이상	없음
투자	투자준수기간	기간 미설정	3년 내 초기창업자에게 투자
	최소투자금액	1천만원 이상	없음
	투자비율	초기창업자에게 50% 이상	초기창업자에게 자본금 40% 이상, 개투조합 50% 이상, 벤투조합 40% 이상
	의무투자 기준계산식	자본금+개투조합 출자비율	자본금, 조합 등 각각의 의무투자비율 계산
	조건부지분 인수계약	본계정만 가능	본계정 및 조합투자 가능

투자 조합	개투조합	초기창업자 100% 투자	초기창업자 50% 이상 투자
		법인출자 49% 가능	법인출자 30% 가능
	벤처조합	결성 불가	조합결성금액 1%이상 자본금 ^(200억 조합 시, 2억원이상) 부채비율 200% 미만 자본잠식률이 50% 미만
관리	행위제한	없음	비업무용부동산취득,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, 사행산업, 금융회사 등에 투자하는 행위, 정상적인 거래 관계 외 거래요구 등 12가지
	과태료	변경등록, 결산서, 공시 등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(1백만원 ~ 최대 5백만원)	변경등록, 결산서, 공시 등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(3백만원 ~ 최대 3천만원)
	등록취소	거짓등록, 등록요건미준수, 투자금액기준 미달, 전문 보육 미시행, 부정이익 유구 등 5가지 (위반 1차 → 2차 → 3차[취소])	기존 외, 행위제한의무, 대주주가 영향력행사, GP로서 위반행위, 임직원 징계미이행등 8가지 (경고→시정명령→업무일부정지→등록취소)

I 등록요건 (법 §24, 영 §13, 규칙 §12)

□ 자본금 · 등기임원 요건

구분	종 전	변 경
자 본 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「상법」상 회사 ⇨ 납입자본금 1억원 이상 ② 「민법」 등의 비영리법인 ⇨ 출연재산 5천만원 이상 * 단, 창경혁신센터의 경우 경우 ⇨ 1천만원 이상 ③ 「협동조합기본법」상 협동조합 등 ⇨ 5천만원 이상 	종전과 같음
등 기 임 원 요 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미성년자·피성년후견인·피한정후견인이 아닌 사람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⑤ 금융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	<p>종전 외에 추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⑥ 금융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⑦ 등록 말소전 등록 취소사유가 있던 당시 임원으로 취소 통보받은 날부터 5년 또는 말소일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⑧ 등록 취소된 창업기획자의 임원으로 창업기획자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⑨ 중기부로부터 면직을 요구받아 면직된 자로서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

□ 전문인력 요건 (2명 이상)

중 전
① (자격) ①기술사, ②변호사, ③공인회계사, ④변리사, ⑤전문개인 투자자, ⑥경영·기술지도사
② (학위) ①박사학위 소지자(이공·경상계열), ②석사학위(이공·경상계열) 소지자로 해당분야 업무 3년 이상 종사자
③ (경력) ①창투사, 기업구조조정회사, 신기사, 신창사,유한회사, 지주회사에서 3년 이상 투자심사 업무자 ②창업보육센터, 창투사, 액셀러레이터, 창경센터에서 3년 이상 창업기획 업무자 ③개투조합의 GP로서 3년 이상 경력자 ④매출 백억원이상 회사에서 임원으로 3년이상 근무자 ⑤임원으로 기업공개하거나 50억원이상으로 매각한자 ⑥주권상장법인의 설립자 또는 상장 당시 대표이사 ⑦이공계 학사학위자로 국공립연구기관·정부출연연구기관·기업부설연구소에서 4년 이상 종사한 자 ⑧학사소지자로 은행, 증권회사, 창투사 업무에 준하는 업무를 외국회사에서 3년 이상 투자심사 업무자 ⑨TIPS에 선정된 운영사의 등기임원으로 창업·투자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



변 경
① (자격) 종전과 같으나 ⑥경영·기술지도사는 3년 이상 해당 분야 경력 필요
② (학위) ①종전과 같음
③ (경력) 종전과 같으나 ①창투사, 유한회사, 신기사, 신창사, 지주회사에서 2년 이상 투자심사 업무 또는 3년 이상 투자 관련 업무자로 확대 ⑤임원으로 기업공개자는 삭제 추가는 ⑩벤처기업의 창업자 또는 창업자이었던 사람으로 해당 벤처기업의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있었던 적이 있는 자
④ (교육) 회사등에서 경영·기술개발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자로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가 주관하는 '창업기획자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' 수료자 신설

* 준법감시인 1인 이상 지정 추가

□ 시설기준 요건

중 전
① 보육시설 개념 : 초기창업자에게 사무실 제공
② 보육공간의 보유방법 : 소유, 임대차계약
③ 보육거리 : <없음>
④ 장비보육 : 제조업인 경우, 시제품 제작장비 보유



변 경
① 보육시설 개념 : 초기창업자에게 <u>보육공간</u> 제공
② 보육공간의 보유방법 : 종전외에 <u>협약도 인정</u> * 공유오피스, BI 등과의 협약을 말하며 협약서에는 사용자, 사용범위, 사용금액, 사용시간, 협약기간(1년 이상) 등 명기
③ 보육거리 : <u>본사와 보육공간 위치는 동일 광역시·도내</u> * 다만, 근접한 시·도내에 위치하거나, 원거리 보육시설에 전문인력이 상주하는 등 보육이 가능할 경우에는 예외인정 * (사례 1) 서울특별시 강남에 본사가 위치, 보육시설은 경기도 판교에 있는 경우, 근거리(20km 이내)인 점을 고려하여 인정 * (사례 2) 경기도 성남에 본사가 위치, 육성 중인 초기창업자가 자율주행 분야이고 제품개발 테스트를 위해 자율주행 특구단지인 세종에 보육시설이 위치할 경우, 전문인력을 보육공간에 상주시킨다면 인정 * (사례 3) 광주광역시에 본사가 위치, 초기창업자의 수도권 마케팅 지원을 위해 보육시설은 서울 종로구에 설치할 경우, 전자기기 등 비대면 보육 인프라 환경 구축시 인정
④ 장비보유 : 삭제

□ 벤처투자조합 등록요건

중 전
< 없음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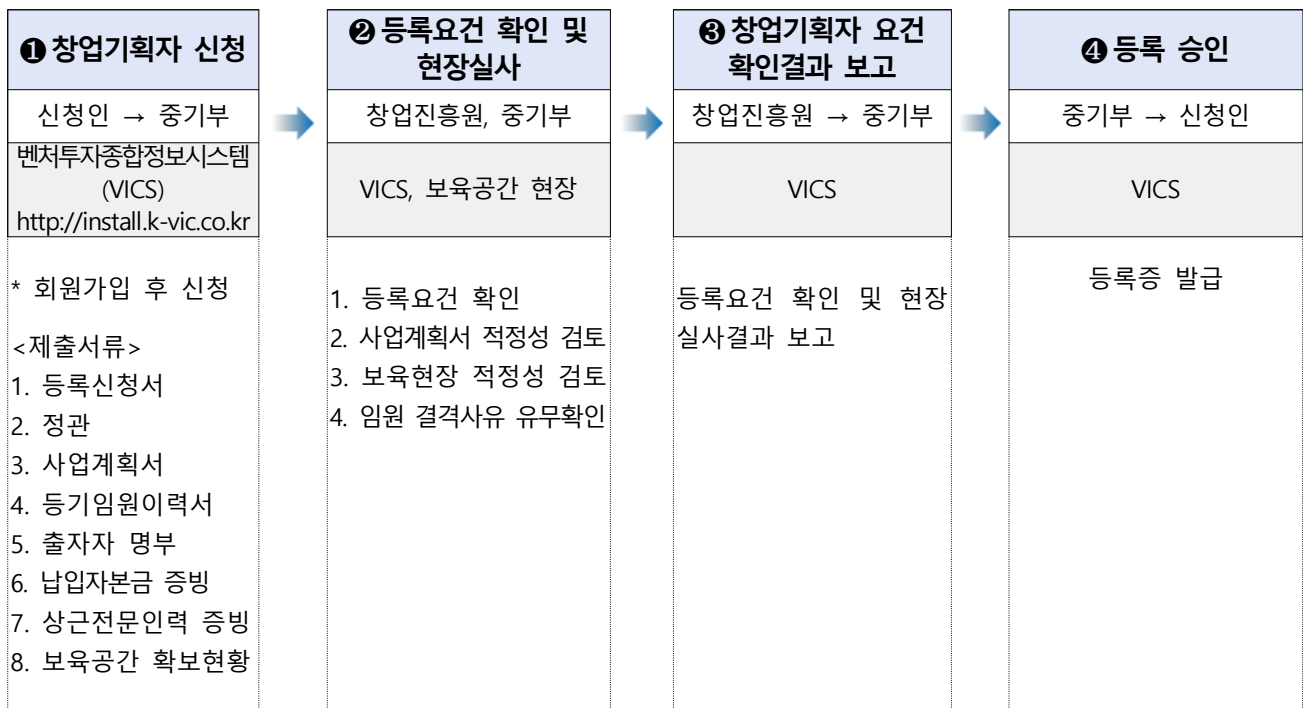
변 경
<p>① 자본금이 벤처투자조합 결성금액의 1% 이상일 것</p> <p>* 벤처투자조합이 200억 규모로 조성시 자본금 2억원 이상</p> <p>② 창업기획자의 부채비율이 200%를 넘지 않을 것</p> <p>③ 창업기획자의 자본잠식률이 50% 미만일 것</p>

□ 창업기획자의 유지조건

중 전
< 없음 >

변 경
<p>① 창업기획자의 자본잠식률이 100% 미만일 것</p> <p>* 다만,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려고 하거나 결성한 창업 기획자는 50% 미만일 것</p>

□ 등록절차 (중전과 동일)



* 총 처리기간은 30일(다만, 신청서류 보완 등의 사유로 기간 내에 통지가 곤란할 경우 20일 이내 연장 가능)

Ⅱ 선발 · 보육 의무 (법 §25, 영 §14)

구분	종전	변경
선발	창업자 선발대회 또는 그 밖의 공정한 방법에 따라 선발	선발기준 및 선발절차를 마련하여 선발
보육 기간	3개월 이상	< 없음 >
보육 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사업 모델 개발 ② 기술 및 제품 개발 ③ 시설 및 장소의 확보 ④ 경영 컨설팅 및 전문가 상담 ⑤ 마케팅 및 제품판로 개척 ⑥ 사업 인·허가 절차 진행 ⑦ 다른 창업자 및 창업기획자 등과 연계 	종전 외에 추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⑧ 초기사업비 제공을 위한 투자 ⑨ 내·외부 교육 프로그램 연계 지원

- 27 -

Ⅲ 투자 의무 (법 §26, 영 §15)

구분	종전	변경
투자 기간	< 없음 >	등록 후 3년 안에 투자 (법 제26조) *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에도 투자 의무 비율 유지
투자 비율	전체투자금액의 50% 이상을 초기창업자에게 투자 * 본계정과 개인투자조합(투자비율)의 투자금액 합산	전체투자금액의 40% 이상을 초기창업자에게 투자 * 그 외 조합을 통한 투자기준은 개투자합 50% 이상, 벤처투자조합 40% 이상을 초기창업자에게 투자 (법 시행령 제7조, 제35조, 각각 해당 비율 유지)
투자 금액	최소 1천만원 이상	< 없음 >
투자 방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신규로 발행되는 주식·지분인수 ② 무담보 전환사채 ③ 무담보 신주인수권부사채 ④ 무담보 교환사채 ⑤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의 체결 	종전과 같음

- 28 -

IV 행위제한 (법 §27, 영 §16)

□ 창업기획자의 행위제한 (신설)

- 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회사에 투자하는 행위
- ② **非업무용부동산**을 취득·소유하는 행위 (단, 담보권 실행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예외)
- ③ **사행시설, 유흥주점업** 등에 투자하는 행위
- ④ 금융회사,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, 창업기획자의 특수관계인 중 **계열회사의 지분을 소유하는 행위**
- ⑤ 창업기획자의 주요주주·계열회사에 대한 **신용공여** 행위
- ⑥ **경영지배**를 목적으로 투자하는 행위
- ⑦ 타인을 위해 **담보를 제공**하거나 보증하는 행위
- ⑧ **제3자**를 위하여 주식을 취득·자금 중개하는 행위
- ⑨ **정상적인 거래관계 외의 거래**를 통하여 자금을 받는 행위
- ⑩ 투자계약서에 **적힌 사항 외에 별도조건**을 설정하여 투자하는 행위
- ⑪ **임직원**에 대한 **대출**로 건전한 자산운용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
위 사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**3자와 담합**하여 서로 교차하는 행위

- 29 -

□ 창업기획자 대주주·그의 특수관계인의 행위제한 (신설)

- ① 창업기획자에게 **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자료**를 요구하는 행위
- ② 창업기획자의 **경영에 부당한 영향력**을 행사하는 행위
- ③ 창업기획자에게 **불리한 조건으로 대주주 자신이나 제3자와의 거래**를 요구하는 행위
- ④ 창업기획자의 업무운영상황 보고자료 작성과정에서 **영향력**을 행사하는 행위

<대주주(출자자) 정의>

- ①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을 기준으로 본인과 특수관계인이 소유하는 주식이 가장 많고 그 주식수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%를 초과하는 경우의 그 본인
- ②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30%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자
- ③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해당 창업기획자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

※ 발행주식 :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 총수

- 30 -

VI 보고 및 공시의무 (법 §31~32, 영 §22, 고시)

□ 보고의무

종 전
① 보고 - 결산보고 : 없음 - 정기보고 : 업무 운영상황 등(반기별)
② 확인 및 검사 (필요시) - 등록요건 유지, 투자 의무 준수 여부



변 경
① 보고 - 결산보고 : 감사 의견서 첨부된 결산서(3개월 이내) - 정기보고 : 업무 운영상황 등(월별)
② 확인 및 검사 (필요시) - 종전과 같음

□ 공시의무

종 전
① 정기공시 - (항목) 조직·인력, 재무·경영, 조합결성·운영, 투자·보육현황 - (시기) 사업연도 종료 후 4월 이내
② 수시공시 - (항목) 정기공시 사항 중 변경, 법령위반 등 처분사항 - (시기) 매월 말일까지
③ 자율공시 - (항목) 주요경영사항, 조합결성·해산, 투자성공사례 - (시기) 자율적으로



변 경
< 종전과 같음 >

V 등록취소 등 (법 §36, 고시 §10~17)

□ 위반사항

종 전
① 거짓,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(변경등록)한 경우
② 자본금 등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
③ 투자금액이 기준에 미달한 경우
④ 전문보육을 하지 않은 경우
⑤ 초기창업자에게 부정한 이익을 받거나 요구하는 경우



변 경
종전 외에 추가
⑤ 금융회사 투자 등 행위제한의무를 준수 못한 경우
⑥ 창업기획자 대주주가 자신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 등의 행위를 한 경우
⑦ 개투조합 또는 벤투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각 조합 운영의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
⑧ 창업기획자의 건전한 운영을 해친 임직원에 대한 면직, 해임 등의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

□ 행정절차

☞ 등록취소 사항 적발 → 위반사항 사전 통지 → 제재심의위원회 개최 → 행정처분 결과 통지 → 이의 시, 이의신청 → 위원회 재심의 → 결과통지 → 청문 실시(청문은 위원회 진행시 병행하여 진행 가능)

* 신속한 제재조치 필요, 투자 의무 미준수, 경영건전성 기준 미달 등 경미한 법령위반 사항일 경우 위원회 심의 생략 가능

□ 창업기획자 행정처분에 대한 세부기준

종 전		변 경	
창 업 기 획 자	① 등록취소 -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- 초기창업자에게 부정한 이익을 요구한 경우 - 등록요건·투자금액·전문보육 3회 위반	① 등록취소 · 업무정지 -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- 거래자에게 재산상 중대한 손실 초래한 경우 - 시정명령·경고를 2회 이상 받고도 반복하는 경우 - 투자 의무 치유기간 경과 후에도 지속하는 경우	
	② 지원중단 12개월 - 등록요건·투자금액·전문보육 2회 위반		② 업무일부정지 - 거래자에게 재산상 손실 초래한 경우 - 시정명령·경고를 1회 이상 받고도 반복하는 경우 - 투자 의무 시정명령 치유에 필요한 경우
	③ 경고 - 등록요건·투자금액·전문보육 위반		③ 시정명령 - 경고의 사유에 해당하나 위법에 따른 결과가 치유되지 아니한 경우
		④ 경고 - 위법행위로서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는 경우	

□ 임직원 행정처분에 대한 세부기준

종 전		변 경
임 직 원	< 없음 >	① 면직 · 해임 - 고의로 중대한 위법행위를 함으로써 창업기획자의 공신력을 크게 훼손한 경우 - 창업기획자의 경영을 위태롭게 하거나 이해관계자에게 재산상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- 고의로 업무운영상황보고 등에 허위로 기재한 경우 - 고의·중과실로 법에 따라 요구하는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여 검사업무를 크게 저해한 경우 - 고의·중과실로 법령상의 의무를 게을리한 경우
		② 6개월 이내 직무정지 - 1항에 해당하나 제재의 효과를 위해 필요한 경우 - 1항에 해당하나 정상참작 사유가 있는 경우 - 투자 의무 시정명령 치유에 필요한 경우
		③ 경고 - 법의 이행을 태만히 한 경우 - 허위로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 - 검사업무를 수행을 거부한 경우 - 법에 의한 행정처분 이행을 게을리한 경우

□ 과태료 부과

중 전
<p>① 공시하지 않은 경우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차위반 : 1백만원, 2차 : 2백만원, 3차 : 3백만원 -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 : 5백만원 - 검사를 거부·방해한 경우 : 5백만원



변 경
<p>① 중요사항 변경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변경 등록 불이행기간 1개월 미만 : 3백만원 - 1개월 이상 ~ 3개월 미만 : 5백만원 - 3개월 이상 및 하지 않은 경우 : 1천만원 - 거짓으로 변경등록 한 경우 : 2천만원
<p>② 결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차위반 : 3백만원, 2차 : 5백만원, 3차 : 1천만원 - 거짓으로 결산서를 제출한 경우 : 3천만원
<p>③ 공시하지 않은 경우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차위반 : 3백만원, 2차 : 5백만원, 3차 : 1천만원 -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 : 3천만원
<p>④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차위반 : 3백만원, 2차 : 5백만원, 3차 : 1천만원 -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: 3천만원 - 검사를 거부·방해한 경우 : 3천만원



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

☞ 벤처투자를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로서 법 제37조에 따라 등록된 회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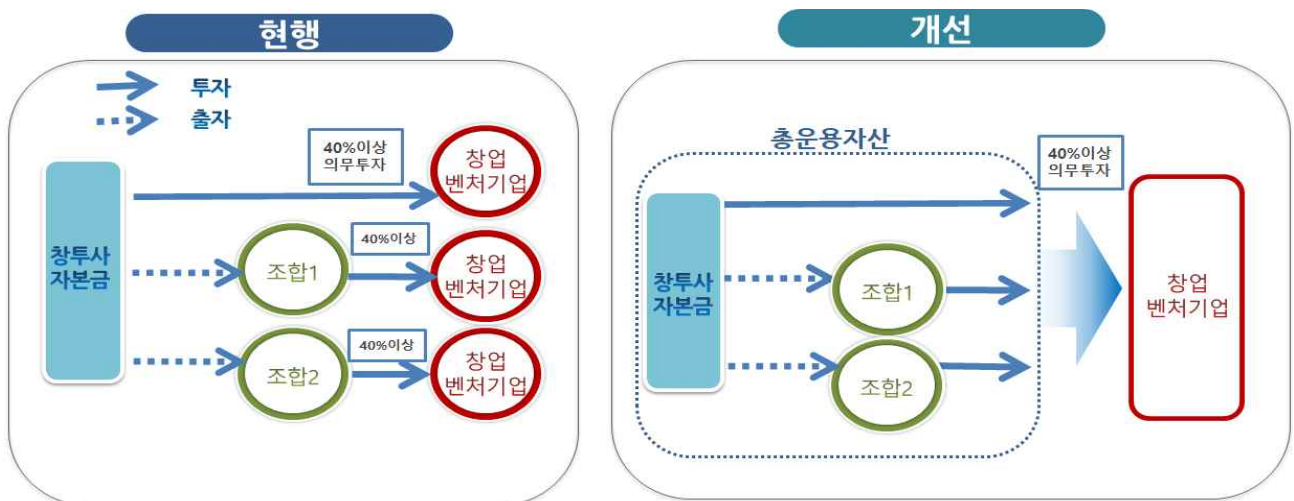
I 등록 요건 (법 §37)

- (납입자본금) 20억원 이상 (차입금이 납입자본금의 20% 미만)
- (임원·대주주) 임원의 결격사유*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주주가 사회적 신용도**를 갖출 것
 - * 1) 미성년자·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, 2)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, 3)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 (법 §37② 참고)
 - ** 최근 3년간 금융관련 법령, 공정거래법 또는 조세법 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등 (영 §23⑥ 참고)
- (상근 전문인력) 요건(영 §23⑦ 참고)에 충족하는 전문인력을 2명 이상 갖출 것(등록 말소 또는 취소 당시 임원이었던 자는 말소일 5년 또는 취소일(취소사유 통보일)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는 제외)
- (기타) 창투사와 투자자 간,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출 것
 -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·감독하는 준법감시인을 1인 이상을 지정할 것(이 때 준법감시인은 사내 이사 또는 소속직원 중에 선임해야 하며, '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'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인 소속직원을 준법감시인으로 선임 불가)

II 투자 의무비율 산정 (법 §38)

- (비율 산정방법)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까지 운용중인 총자산(자본금과 운용중인 모든 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액의 합)의 40% 이상을 창업자·벤처기업 등*에 투자

* 1) 창업자, 2) 기술혁신형·경영혁신형 중소기업, 3) 벤처기업, 4) 프로젝트



□ (비율 산정금액)

- 1) 창업자, 2) 기술혁신형·경영혁신형 중소기업, 3) 벤처기업, 4) 프로젝트(중소기업이 개발하거나 제작하며 다른 사업과 회계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업)에 사용한 투자금액으로서 다음의 방법으로 투자한 금액(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전에 투자한 금액으로 한정)

- ① 신규로 발행되는 주식 또는 지분의 인수(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규로 발행되는 주식의 인수는 제외)
- ② 신규로 발행되는 무담보전환사채,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, 무담보교환사채(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과 교환하는 경우는 제외)의 인수
- ③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의 체결

- 개인 또는 개인투자조합이 3년 이상 보유한 창업자의 주식을 인수(개인 또는 개인투자조합이 인수할 당시 신규발행한 주식에 한함)한 경우에 투자비율에 포함 (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전에 투자한 금액으로 한정)

□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액, 창업투자회사의 자본금 등에 대해 창업투자회사의 투자의무비율 산정시 총자산 예외 적용 (영 §24②)

조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결성된 지 3년이 지나지 않는 조합의 출자금액 ② 벤처투자모태조합이 출자하고 투자의무비율을 달리 정하는 조합의 출자금액 ③ 이 법 시행 전에 벤처투자모태조합이 출자하여 결성한 조합의 출자금액 ④ 이 법 시행 전에 다음의 사업을 주목적(60% 이상)으로 결성한 조합의 출자금액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1) 중소·벤처기업에 대한 인수·합병 2) 중소·벤처기업의 기발행 주식, 무담보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, 유한회사의 출자지분의 인수 3) 다른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또는 유한책임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해당 조합의 출자지분의 인수 4) 다른 벤처투자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등의 매수 5) 다른 벤처투자조합 및 개인투자조합에 대한 출자
-----------	---

창업투자사	<p>창업투자사가 운용하는 벤처투자조합 출자금액의 합이 납입자본금의 200% 이상인 경우의 해당 창업투자사의 자본금</p>
--------------	--

III 행위제한 (법 §39)

현 행

- ① 1)~3)의 주식을 취득·소유하는 행위 제한
 - 1) 「금융실명법」에 따른 금융회사등
 - 2)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·기업구조조정조합
 - 3)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
- ② 1)~4)와 거래(투자·증권 소유, 신용공여)하는 행위 제한
 - 1) 창투사가 결성한 창업투자조합
 - 2) 창투사의 특수관계인
 - 3) 창투사의 주요주주(그 특수관계인 포함)
 - 4) 창투사가 결성한 창업투자조합의 주요 출자자 및 그 특수관계인

개 선

- ① 1)~5)의 지분·주식을 취득·소유하는 행위 제한
 - 1) 「금융실명법」에 따른 금융회사등*
 - 2)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
 - 3)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
 - 4) 해당 창투사의 특수관계인 중 계열회사
 - 5) 해당 창투사의 주요주주
- ② 1)~2)의 신용공여 행위 제한
 - 1) 창투사의 주요주주(그 특수관계인 포함)
 - 2) 창투사의 계열회사

* (예외) ¹⁾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금융서비스업(인터넷전문은행업, 전자금융업,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, 소액해외송금업)을 주된 업종으로 하는 회사, ²⁾ 벤처투자조합, ³⁾ 사모펀드 전담운용사

IV 행위제한 예외 (법 §39)

□ 지분·주식을 소유하는 행위에 대한 예외

현 행

- ① 기업구조조정조합,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업무집행조합원(업무집행사원)으로 참여하는 경우
- ② 창투사가 인수·합병을 목적으로 다른 창투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

개 선

- ① 기업구조조정조합(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포함),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창업·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조합원(업무집행사원)으로 참여하는 경우
- ② 창투사가 인수·합병을 목적으로 다른 창투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
- ③ 창업기획자 등*을 계열회사로 편입하는 경우

* ¹⁾ 창업기획자, ²⁾ 사모펀드 전담운용사, ³⁾ 기업인수목적회사 및 그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한 후에 존속하는 법인(다만, 그 존속법인은 합병등기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창투사 계열회사에서 제외), ⁴⁾ 문화산업전문회사, ⁵⁾ 해외투자를 주목적으로 설립한 해외법인

□ 비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행위에 대해 일부 허용

현 행

창투사가 설립한 창업보육센터, 사무실에 해당하는 업무용 부동산을 제외한 부동산(비업무용 부동산)을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행위는 제한



개 선

창투사 본점이 위치한 부동산(연면적의 10% 이상을 업무용 부동산으로 직접 사용할 경우에 한정)을 소유하는 경우

* 다만,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단일 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부동산이어야 하며, 단일 건물에 구분 소유되어 있는 경우에는 구분소유권의 객체인 여러 개의 층이 연접해 있거나 물리적으로 하나의 부동산으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함

V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(법 §42)

□ 아래에 해당하는 자가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비공개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 제한

- ① 창투사(그 계열회사 포함)의 임직원·대리인으로서 직무 관련 정보를 알게 된 자
- ② 창투사의 주요주주로서 그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직무 관련 정보를 알게 된 자
- ③ 창투사에 대하여 법령에 따른 허가·인가·지도·감독, 그 밖의 권한을 가지는 자로서 그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직무 관련 정보를 알게 된 자
- ④ 창투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체결을 교섭하고 있는 자로서 그 계약을 체결·교섭 또는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무 관련 정보를 알게 된 자

※ 대리인, 사용인, 그 밖의 종업원 및 ①~④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포함

□ 처분사유

창투사

(취소, 업무정지명령,
시정명령, 경고,
지원중단)

임직원

(면직 또는 해임,
직무정지, 경고)

-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
- ② 창투사의 책임 있는 사유(파산, 부도 등)로 사업수행이 어렵게 된 경우
- ③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
- ④ 등록 후 3년이 지나기 전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투자를 하지 아니한 경우(투자의무를 모두 이행한 경우에는 제외)
- ⑤ 창투사의 투자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
- ⑥ 행위제한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
- ⑦ 창투사의 대주주가 행위제한의무를 위반하여 자신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행위를 한 경우
- ⑧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행위제한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
- ⑨ 공모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'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'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
- ⑩ 유사수신행위를 한 경우
- ⑪ 중기부장관이 요구한 임직원에게 대한 제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

□ 창투사 및 그 임직원에게 대한 제재의 종류 및 양정기준 신설

- (창투사) 등록 취소, 업무의 정지, 지원의 중단, 시정명령, 경고

**등록 취소,
업무의 전부정지**

- 가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경우
- 나. 창투사가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크게 저해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당해 창투사 또는 창투사와 거래하는 자에게 재산상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
- 다. 업무의 일부 정지조치를 받고도 업무를 계속하거나, 최근 1년 이내에 동일 또는 유사한 위법·부당한 행위로 업무의 일부정지, 시정명령 및 경고의 처분을 1회 이상 부과받고도 다시 반복하는 경우
- 라. 치유기간 경과 후에도 위반사실이 치유되지 않을 경우
- 마. 가목부터 라목까지에도 불구하고, 창투사의 위법·부당행위로 벤처투자 시장의 건전성을 크게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다고 중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

**업무의 일부정지,
지원의 중단**

- 가. 창투사가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크게 저해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당해 창투사 또는 창투사와 거래하는 자에게 재산상 손실을 초래한 경우
- 나. 최근 3년 이내에 동일 또는 유사한 위법·부당한 행위로 시정명령 및 경고의 처분을 1회 이상 부과받고도 다시 반복하는 경우
- 다. 법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 정하는 창투사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하거나 위반사실 치유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시정명령

위법·부당행위에 따른 결과가 치유되지 아니하거나 치유하기 위한 명령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

경 고

위법·부당행위에 대해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고 위법·부당행위가 치유된 경우

○ (임직원) 면직·해임,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, 경고

면직, 해임

- 가. 고의로 중대한 위법·부당행위를 함으로써 창투사의 공신력을 크게 훼손한 경우
- 나. 창투사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 당해 창투사의 경영을 심히 위태롭게 하거나 당해 창투사 또는 창투사와 거래하는 자에게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한 경우
- 다. 고의 또는 중과실로 업무운영상황보고 등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하여 창투사와 거래하는 자에게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
- 라. 고의 또는 중과실로 중기부장관이 법령에 의하여 요구하는 보고서 또는 자료를 허위로 제출함으로써 검사업무 수행을 크게 저해한 경우
- 마. 고의 또는 중과실로 법령상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창투사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저해한 경우

**6개월 이내의
직무정지**

- 가. 위법·부당행위가 면직 및 해임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되고 면직 및 해임에 따른 제재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
- 나. 위법·부당행위가 면직 및 해임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되나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는 경우

경 고

- 가. 법령을 위반하거나 그 이행을 태만히 한 경우
- 나. 중기부장관이 법령에 의하여 요구하는 보고서 또는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제출을 태만히 한 경우
- 다. 법령상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창투사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한 경우
- 라. 법령에 의한 중기부의 검사업무의 수행을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
- 마. 법령에 의한 중기부의 행정처분 또는 요구의 이행을 태만히 한 경우



벤처투자조합

☞ 창투사 등이 벤처투자자와 그 성과의 배분을 주된 목적으로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법 제50조에 따라 등록한 조합

I 등록요건 (법 §50)

- (출자금 총액) **20억원 이상** (분할 출자할 경우 최초 출자금액은 10억원 이상)
- (업무집행조합원) **창업기획자, 창투사, 한국벤처투자, 신기술사업금융업자,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, 유한(책임)회사** (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함)

< 유한(책임)회사의 요건 >

- (출자금 총액) 조합 결성금액의 **1% 이상**일 것
 - * (예시) 20억원 규모의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려는 경우 LLC의 출자금총액(자본금)이 2천만원 이상
- (전문인력) 벤처투자 경력 ¹⁾ 5년 이상 1명 + 3년 이상 2명 또는 ²⁾ 5년 이상 2명
- (부채비율) **200% 미만**일 것
- (기타) 투자심사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 중 **1인은 유한(책임)회사의 직원**일 것

- (유한책임조합원) **49인 이하***

- * 1) '자본시장법' 시행령 제271조의14제1항에 따른 전문투자자(산은, 기은, 신보, 기보 등)는 산정 제외
- 2) 벤처투자모태조합 및 농림수산식품모태조합은 산정 제외
- 3) 집합투자기구가 해당 조합에 10% 미만 출자한 경우 1인, 10% 이상 출자한 경우 각 1인으로 산정
- 4) 사모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는 해당 조합에 10% 이상 출자한 경우는 1인으로 산정

- 51 -

II 투자의무비율 산정 (법 §51)

- 등록 후 **3년이 지난 날까지 동일 GP가 운용하는 모든 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의 합**의 **40% 이상**을 **창업자·벤처기업 등***에 투자

* 1) 창업자, 2) 기술혁신형·경영혁신형 중소기업, 3) 벤처기업, 4) 프로젝트

- 창투사 투자방법(신규로 발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인수, 무담보전환사채 등)과 동일
- 개인 또는 개인투자조합이 3년 이상 보유한 창업자의 주식을 인수(개인 또는 개인투자조합이 인수할 당시 신규발행한 주식에 한함)한 경우에 투자비율에 포함 (영 §24②)

- 동일 GP가 운영하는 **각 벤처투자조합 출자금액의 20% 이상**을 창업자·벤처기업 등에 투자

- 조합이 증권시장에 **상장된 법인에 투자하는 경우 20%를 초과할 수 없음**

- 다만, '자본시장법' 제6조제4항제14호에 따른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에 투자로 보지 아니함

※ 창업기획자가 GP인 벤처투자조합은 **투자비율(40%) 이상**을 초기창업자에 대한 투자 **必**

※ 창투사가 GP인 벤처투자조합은 창투사의 투자의무비율 산정방식에 따름

- 52 -

III 행위제한 (법 §52)

현행

- ① 1)~3)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행위 제한
 - 1) 「금융실명법」에 따른 금융회사 등
 - 2)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·기업구조조정조합
 - 3)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
- ② 1)~4)와 거래(투자 또는 증권 소유)하는 행위 제한
 - 1) GP가 결성한 창업투자조합
 - 2) 창업투자조합의 특수관계인
 - 3) GP의 주요주주(그 특수관계인 포함)
 - 4) GP가 결성한 창업투자조합의 주요 출자자 및 그 특수관계인

개선

- ① 1)~3)의 지분·주식을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행위 제한
 - 1) 「금융실명법」에 따른 금융회사 등*
 - 2)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
 - 3)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
- ② 1)~6)에 조합 보유자산을 매각하는 행위 또는 1)~6)이 발행하거나 소유한 주식·지분을 매입하는 행위 제한
 - 1) GP, 2) GP의 임직원(배우자 포함)
 - 3) GP의 주요주주(배우자 포함)
 - 4) GP의 계열회사**
 - 5) 조합의 주요출자자(계열회사 포함)
 - 6) 동일 GP의 개인·벤처투자조합 등

* (예외) ¹⁾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금융서비스업(인터넷전문은행업, 전자금융업,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, 소액해외송금업)을 주된 업종으로 하는 회사, ²⁾ 벤처투자조합
 ** (예외) ¹⁾ GP가 운영하는 조합이 투자한 기업, ²⁾ 투자목적회사 및 그 회사가 투자한 기업

IV 투자목적회사 (법 §52, 영 §36)

- 원칙적으로 GP는 GP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주식·지분을 매입하는 행위를 제한하나, 동일 GP가 결성한 조합이 출자한 투자목적회사가 발행한 주식·지분을 매입하는 행위는 허용
- 투자목적회사 요건

요건

- ① '상법'에 따른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일 것
- ② 조합 규약에 투자목적회사 설립에 관한 내용을 반영할 것
- ③ 조합이 단독으로 100% 출자한 회사일 것
- ④ 조합이 투자목적회사에 출자할 수 있는 금액의 총합은 조합 출자금 총액의 40% 이하일 것
- ⑤ 투자목적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조합은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의결할 것
- ⑥ 조합의 GP에게 회사 재산의 운용을 위탁할 것
- ⑦ 상근임원을 두거나 직원을 고용하지 아니하고 본점 외에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

□ 투자목적회사가 **창업자·벤처기업 등에 투자한 금액**(창투자·벤처투자조합이 창업자·벤처기업 등에 투자한 금액을 산정방법과 동일)은 **조합의 투자비율에 포함**

○ 투자목적회사 자본금 × $\frac{\text{창업자·벤처기업 투자금액}}{\text{투자목적회사 전체 투자금액}}$, 창업자·벤처기업 투자금액 중 적은 금액

- * (사례) 1) 자본금 20억원, 차입금 20억원, 전체 투자금 10억원, 창업자등 투자금 10억원 → **10억원 인정**
- 2) 자본금 20억원, 차입금 20억원, 전체 투자금 30억원, 창업자등 투자금 30억원 → **20억원 인정**
- 3) 자본금 20억원, 차입금 20억원, 전체 투자금 40억원, 창업자등 투자금 25억원 → **12.5억원 인정**

□ **투자목적회사의 운영**

- 투자목적회사 자기자본의 **300% 이내 범위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 가능**
- 설립 이후 3년이 지난 날까지 **자본금·차입금을 합한 금액의 60% 이상을 창업자·벤처기업 등에 투자**
- 조합의 GP는 투자목적회사의 업무운영상황을 포함하여 조합의 업무운영상황 보고
- 투자목적회사는 **해당 조합이 해산되기 이전에 청산 종결되어야 할 것**
- 청산종결시 처분하지 못한 잔여주식·지분은 **해당 조합이 인수해야 할 것**
- 다른 벤처투자조합 또는 투자목적회사에 출자하지 않을 것

V 행정처분 (법 §62)

□ **처분 사유**

<p>벤처투자조합 (취소, 업무정지명령, 시정명령, 경고, 지원중단)</p>	<p>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</p> <p>②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</p> <p>③ 벤처투자조합의 투자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</p> <p>④ 행위제한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</p> <p>⑤ 벤처투자조합 재산의 보관·관리를 신탁업자에게 위탁하지 아니한 경우</p> <p>⑥ 결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</p>
<p>업무집행조합원 (업무정지명령, 시정명령, 경고)</p>	<p>⑦ 공모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'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'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</p> <p>⑧ 확인 및 검사를 거부·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</p>
<p>임직원 (면직 또는 해임, 직무정지, 경고)</p>	<p>⑨ 업무집행조합원 전원의 등록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</p> <p>⑩ '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' 제3조를 위반하여 조합원을 모집한 경우</p>

□ 벤처투자조합, GP 및 그 임직원에게 대한 제재의 종류 및 양정기준 신설

○ (조합, GP) 등록 취소(조합만 해당), 업무의 정지, 지원의 중단, 시정명령, 경고

**등록 취소,
업무의 전부정지**

- 가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변경 등록한 경우
- 나. GP가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크게 저해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당해 조합 또는 조합과 거래하는 자에게 재산상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
- 다. 업무의 일부 정지조치를 받고도 업무를 계속하거나, 최근 1년 이내에 동일 또는 유사한 위법·부당한 행위로 업무의 일부정지, 시정명령 및 경고의 처분을 1회 이상 부과받고도 다시 반복하는 경우
- 라. 치유기간 경과 후에도 위반 사실이 치유되지 않을 경우
- 마. 가목부터 라목까지에도 불구하고, 창투사 등의 위법·부당행위로 벤처투자 시장의 건전성을 크게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다고 중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

**업무의 일부정지,
지원의 중단**

- 가. GP가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크게 저해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당해 창투사 등 또는 창투사 등과 거래하는 자에게 재산상 손실을 초래한 경우
- 나. 최근 3년 이내에 동일 또는 유사한 위법·부당한 행위로 시정명령 및 경고의 처분을 1회 이상 부과받고도 다시 반복하는 경우
- 다. 법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 정하는 조합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하거나 위반사실 치유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시정명령

위법·부당행위에 따른 결과가 치유되지 아니하거나 치유하기 위한 명령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

경 고

위법·부당행위에 대해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고 위법·부당행위가 치유된 경우

○ (임직원) 면직·해임,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, 경고

면직, 해임

- 가. 고의로 중대한 위법·부당행위를 함으로써 GP의 공신력을 크게 훼손한 경우
- 나. 조합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저해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당해 조합 또는 조합원 등에게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한 경우
- 다. 고의 또는 중과실로 업무운영상황보고 등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하여 조합과 거래하는 자에게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
- 라. 고의 또는 중과실로 중기부장관이 법령에 의하여 요구하는 보고서 또는 자료를 허위로 제출함으로써 검사업무 수행을 크게 저해한 경우
- 마. 고의 또는 중과실로 법령상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조합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저해한 경우

**6개월 이내의
직무정지**

- 가. 위법·부당행위가 면직 및 해임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되고 면직 및 해임에 따른 제재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
- 나. 위법·부당행위가 면직 및 해임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되나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는 경우

경 고

- 가. 법령을 위반하거나 그 이행을 태만히 한 경우
- 나. 중기부장관이 법령에 의하여 요구하는 보고서 또는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제출을 태만히 한 경우
- 다. 법령상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조합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한 경우
- 라. 법령에 의한 중기부의 검사업무의 수행을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
- 마. 법령에 의한 중기부의 행정처분 또는 요구의 이행을 태만히 한 경우

Ⅶ 공모벤처투자조합 등록요건 (법 §63)

- (출자금 총액) 200억원 이상일 것
- (GP의 출자지분) 출자금 총액의 5% 이상
- (존속기간) 5년 이상일 것
- (GP의 요건)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창업투자회사일 것
 - 납입자본금 40억원 이상일 것
 - ¹⁾ 벤처투자 경력 3년 이상인 자, ²⁾ 경영 또는 기술개발 경력 3년 이상이면서 전문인력양성 교육과정을 마친 자, ³⁾ 변호사·공인회계사·변리사 중 어느 하나 자격을 갖춘 자를 각각 1명 이상 포함하여 **총 5명 이상** 갖추 것
 - 전산설비 및 통신수단, 업무공간 및 사무장비, 보완설비 등을 충족할 것